독일 신문평의회나 프랑스 르몽드 윤리강령에서는 비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출처 명시 원칙은 없다. 영국 가디언의 편집강령은 '무분별한 익명보도의 남용은 문제'라며 특정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인용은 사전에 책임 에디터와 의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뢰성이 중요, 표현도 구체적이어야

외국 언론의 윤리강령-출처 명시와 익명보도

김영욱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

중 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 기자가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자가 실제 현장에 가더라도 사건 전모를 직접 파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불이 난 현장을 기자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고, 화재의 원인이나 규모,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전문가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에게 출처는 작업의 기본 재료이다. 출처 (source)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적 문제는 사람, 즉 취재원과 관련될 때 더복합적이며 자주 발생한다.

기자는 관찰자의 관찰자

기자는 이처럼 직접적 관찰자이기보다는 '관찰자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그 기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익명 취재원'에 관한 규정(2004년)의 전문(前文)은 "뉴욕 타임스의 독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가, 그리고 왜 그 정보를 신뢰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오랫동안우리 취재원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고,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그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왜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왜 그들이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다."

출처의 명시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며,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적지 않은 경우 익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하며, 어떤 취재원은 익명 조건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길 원한다. 또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과 같이 직업적으로 실명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출처의 명시와 익명 보도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사이에 나타나는 딜레마를 윤리강령과 같은 명시적 규범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규

정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윤리강령의 성격에 따라 실제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언론윤리 규정의 내용과 규제의 밀도, 구체성은 윤리강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윤리강령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누구에게 어떤 구속력으로 적용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국제적인 강령이 있는가 하면, 한 국가 내의 기자(미국의 전문직언론인협회 윤리강령), 편집인(미국의 신문발행인협회윤리강령) 혹은 그 국가 내 기자와 발행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령(한국신문윤리강령)이 있다.

미국 신문사가 상세한 규정 둬

외국의 경우도,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성격의 유리강 령에서 출처 명시가 항상 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문직언론인협회 유리강령은 '가능한 한 언제나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익명 보도를 약속하 기 전에는 반드시 정보제공 동기를 물어야 하며 익명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의 전국저널리스트연합의 유리강령이나 독일 신문평 의회 윤리강령에서는 비밀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출처 명시 원칙은 없다. 독일의 경우는 비밀 유지 약속은 지켜야 하나 범법행위나 헌법질서 와 관련되는 국가정책과 관련될 경우, 공중의 이익이 비밀유지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될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국언론 인조합의 윤리강령이나 지역신문언론인조합의 윤리 강령에 출처 명시나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 프랑스에서는 개별 언론사인 르 몽드 윤리강령에도 출처 명시 원칙은 없고, 취재원 보호에 관해서만 언급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개별 언론사 윤리강령에 출처 명시 원칙이 규정되고 있다.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2005)에는 취재원 명시가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 취재원보호 역시 저널리즘의 핵심 원칙이며 익명을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 명령에도 저항해서 이를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익명 보도에서 취재원을 어떻게 묘사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취재원과 명확하게 합의해 야 하며,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해당 에디터가 알 권 리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익명을 약속한 경우에는, 실 제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예시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의 편집강령은 익명성 보장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무분별한 익명 보도의 남용은 문제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강령에서도 특정 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인용은 사전에 책임 에디 터와 의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신문사의 윤리강령은 출처 명시와 익명 보도 ▲ 익명 보도에서 지켜야 할 사항

뉴욕 타임스'익명 취재원'가이드라인

▲ 익명 허용 경우

- 익명의 출처를 사용하는 것은 뉴스가치가 있으며 신 뢰할 만한 정보를 그렇지 않고는 보도하기 힘든 상황 에 한한다
- 신문사가 취재원에게 익명성을 먼저 제시하지 않지 만, 이주 민감한 사안에서 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인해 취재원이 법적인 문제로 고소를 당하거나 생계에 위 협을 받을 경우는 예외다.
- 정부 관료와 같이 실명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

익명 취재원의 신뢰성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사에 제공한다. 고위 관료와 하위 관 료를 구분한다. 익명 취재원 묘사는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외교관`보다는 '서방 외교관`이,이 보다는 '한 미국 외교관'이 더 낫다. -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의 윤리강령에서는 신문사가 익명 보도 관 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익명 보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는 이에 비해 상세하지는 않지만 익명 보도 약속에 앞 서 최대한 실명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 다는 규정 등 주요 내용을 유리강령에 포함시키고 있 다. 뉴욕 타임스는 이 문제를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신문은 1999년의 윤리강령에 이 미 출처 명시와 익명 보도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음 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다시 더 확대한 형태로 '익 명 취재원'(Confidential News Sources)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제 이슨 블레어 사건을 조사한 시걸 위원회가 권고한 사 항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소 개하다.

- 에 관한 규정을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취재원의 지위와 정보 제공 동기, 취재원이 일차적 정보워이라는 사실을 기사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 취재원 측에서 익명을 요구한 때에는 후속 보도를 통해 타임스가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익명 취재원에게 보도 후 추가적 취재나 보도.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후속 보도와 취재 시점에서 일정 시간 유예하겠다는 동의는 가능하다.)

▲ 익명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는 취재원을 확보한 경우. - 해당 사안을 일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 우. 단. 일차적 출처를 타임스가 알고 있고. 그 사람으 로부터 확실한 대리권을 부여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 투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바로 그 사

안이 보도가치가 있는 경우.

- 익명 보도를 개인이나 정파에 대한 공격을 감추기위해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난하는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익명자의 격렬한 직접적인 표현은 신문뒤에 숨어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게 일방적 이익을줄수 있으며 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익명성을 사소한 논평에 사용하거나 평범한 논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에디터의 책임

- 익명성의 허용은 개인 기자가 아니라 전체 신문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자와 취재원이 이해해야 한다. 취재원의 신원을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에디터는 다 른 기자나 에디터에게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에디터는 차후 동일 사안이나 다른 사안의 보도에 그 취재원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일상적인 기사에서 익명 취재원의 신원과 구체적 역할은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차하급 에디터에게 보고해야 한다. 편집국장과 부국장도 이를 요구해서 알 권리가 있다.
- 중간 정도 민감한 사안에서 기자는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편집국장 혹은 부국장에게만 알릴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야 하며 신뢰의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 극히 민감한 사안, 예를 들면 중대한 법적 문제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취재원이 입을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기자는 편집국장에게 '전적 기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편집국장이 취재원의 신원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묻고, 신원전부를 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규범 에디터(Standards Editor)는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알 권리는 없지만 익명 보도와 관련한 이러한 절차가 잘 지켜지는가, 즉 어떤 에디터가 취재원의 신 원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 익명 취재원을 묘사하는 방법

- 익명 취재원의 신뢰성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정보를 기사에 제공한다.
- 고위 관료와 하위 관료를 구분한다.
- '한 취재원이 말하기를' 과 같은 표현은 의미가 없으며, '믿을 만한 취재원' '사안을 잘 이는 취재원' 도 출처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되지 못한다.
- '한 상원 취재원' 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관리' 는 이미 남용된 표현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 익명 취재원 묘사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외교관' 보다는 '서방 외교관'이, 이보다는 '한 미국 외교관'이 더 낫다. '그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보다는 '그 회의에 참석한 미국 외교관'이나 '그 편지를 읽은 법률가'가 더 나은 표현이다.
- 독자는 진솔함을 높이 평가한다. 가령 '그 법안의 파기를 위해 일하는 상원 보좌관의 보고서' 가 그러한 예이다.
- 문서가 출처인 경우는 가능한 한 문서의 입수 경위 를 밝혀야 한다.
-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했다"는 식의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는 대신,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실제 어떤 형태의 상호약속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하고 최대한 취재원의 동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타임스는 출처를 기만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을 여러 명의 출처로 표현하거나 앞에서 이미 이름을 언급한 취재원에 대해 '다른 관계자'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리 정해진 표현은 있을 수 없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진실해야 하며, 주저하는 방식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세계 각국의 언론윤리강령은 국제기자네트워크 홈페이지 www.ijnet.org, 미국의 언론윤리강령은 미국신 문편집인협회 홈페이지 www.asne.org에 수록되어 있다. 국내 언론사 윤리강령과 외국 일부 윤리강령은 '한국언론의 윤리 점검 시스템' (김영욱, 2004. 한국 언론재단)에 소개되어 있다. ◆